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(2018. 10. 고지분)

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 납세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
가. 부과내역: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(2018. 10. 고지분)

나. 대 상: 백경인(차량번호: 65하4255) 등 1,902건

다. 부과금액: 금99,562,790원(금구천구백오십육만이천칠백구십원)

라. 발송일자: 2019. 01. 02.

마. 납부기한: 2019. 01. 31.

바. 송달방법: 등기우편

서울특별시

붙임: 독촉고지서 발송 내역서 1부. 끝.

주무관 김문길 전용차로과장팀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1/03 오종범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29 () 접수 (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서소문청사 별관1/
동 2층 (서소문동)
전화 2133-4573 /전송 2133-4904 / kmg4804@seoul.go.kr / 부분공개(6)